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나3479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정원 담당변호사 박영신,오유미

변론 종결 2018. 10. 12

판결선 고 2018. 11. 16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단513265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피고는 B에게 별 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8. 4. 4. 접수 제392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항소비용(청구취지 추가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제2항 및 피고는 제 1심공동 피고 B에게 별 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전주 등기소 2002. 4. 16. 접수제 21536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 청구권이 등기에대하여 주위적으로 2012. 3. 9. 예약완결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2017. 5.25. 예약완결권의 소멸 또는 소유권이 전 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별 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4.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원고'를 '피고 C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r9) 피고 C는 2018. 4.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7.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고

○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2001. 3. 9.'을 '2002. 3. 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의 '이 사건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4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가 등기는 그 원인인이 사건 매매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되어야 하고,이 사건가 등기에 기한이 사건본 등기역시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이 사건가 등기및 본 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 가구하는바에 따라 피고는 B에게 그 말소등 기절차를 각이 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가 등기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이 사건가 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이 사건본 등기의 말소등 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판사 이정현판사 정성균

별지